

- 차선분리대 -

◁ 시 방 서 ▷

1. 적용범위

이 시방서는 버스전용차로, 일반도로 등 차선분리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.

2. 적용범위

본 시방서는 (유)새광산업 차선분리대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.

3. 제품의 명칭 및 규격

① 명칭 : (유)새광산업 차선분리대(SK-301)

② 규격

- 80×2000×950mm

4. 운반, 보관 및 취급

모든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5. 설치방법

1) 시공에 들어가기 전 상하행선에 운전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한다.

2) 설치할 위치에 분리대를 세우고 9개소를 편칭을 한다.

3) 9개소 10cm정도 ϕ 14드릴로 천공작업을 실시한다.

4) 천공된 가루는 에어블러워 한후 칼블럭을 9개소 삽입한다.

5) 앵커 볼트 9개로 전구간 체결을 실시한다.

6) 체결한 분리대를 좌우로 45° 정도 휘어본다.

7)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.

8) 설치가 완료된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며, 기타형태 및 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.

6. 기타

차선분리대 제작 및 시공에 있어 설계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.